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29
----------	------

제출일자 : 2026. 6. 8.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달성군 출연·출자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과의 수의협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지상 1층 연면적 487.38㎡	5	휴게음식점 및 주민상설판매장 제외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건물 전체, 대지 부속시설물 일체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그 밖에 위탁자가 해당시설의 소재지(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을축제 등)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직원	단시간 근로자	계
인원	1	4	5

※ 각종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 별도 운영 (달성문화재단 직원 등)

라. 위탁기간: 2년(2026. 7. 1. ~ 2028. 6. 30.)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음
- 하빈PMZ평화예술센터는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평화를 기념하는 공간조성을 통해 안보교육, 지역자산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등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해당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거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사. 향후일정

- 2026. 6. : 달성군-달성문화재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7.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 운영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다. 기타사항(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11.20>

마. 삭제 <2013.11.20>

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삭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위탁 보조금 예산

○ 전체개요

(단위: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총계
총예산	30,819,360	57,825,400	88,644,760

○ 산출내역

(단위:원)

항 목	세부내역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운영 매니저	15,900,000	* 2,650,000원 * 6월 =15,900,000
	단시간 근로자	12,879,360	* 536,640원(10,320*52시간) * 6월 * 4명 = 12,879,360
	4대 보험	2,040,000	* 운영 매니저 300,000원 * 6월 = 1,800,000 * 단시간근로자 10,000원 * 6월 * 4명 = 240,000
	합계		30,819,360
운영비	전기·수도 인터넷요금 등	18,000,000	* 3,000,000원*6개월=18,000,000
	정수기·복합기 임차료	1,115,400	* 정수기 : 20,900원*6개월=125,400 * 복합기 : 165,000원*6개월=990,000
	CCTV 및 통합보안서비스	1,500,000	* 250,000원*6개월=1,500,000 (장애인 화장실 보안 서비스 포함)
	전기안전관리	660,000	* 110,000원*6개월=660,000
	살충·방역	600,000	* 100,000원*6개월=6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00,000	* 150,000원*6개월=900,000
	유지관리 보수비	4,200,000	* 700,000원*6개월=4,200,000
	센터 조경 관리 작업	5,000,000	* 센터 조경 관리 1식 5,000,000
	소계		52,694,760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참여 프로그램] * 주강사 : 230,000원 * 20회 = 4,600,000 * 보조강사 : 90,000원 * 20회 = 1,800,000 [지역민 문화향후 프로그램] * 주강사 : 150,000원 * 20회 = 3,000,000 * 보조강사 : 90,000원 * 20회 * 2명 = 3,600,000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재료비 10,000,000 * 물품구입 1,000,000 * 사무용품 구입 100,000원 * 6월 = 600,000
		홍보비	옥외홍보물 150,000원 * 5월 = 750,000
		회의비	회의비 500,000
		소계	25,850,000
	합계		57,825,400

※ 2026. 7. ~ 12. 기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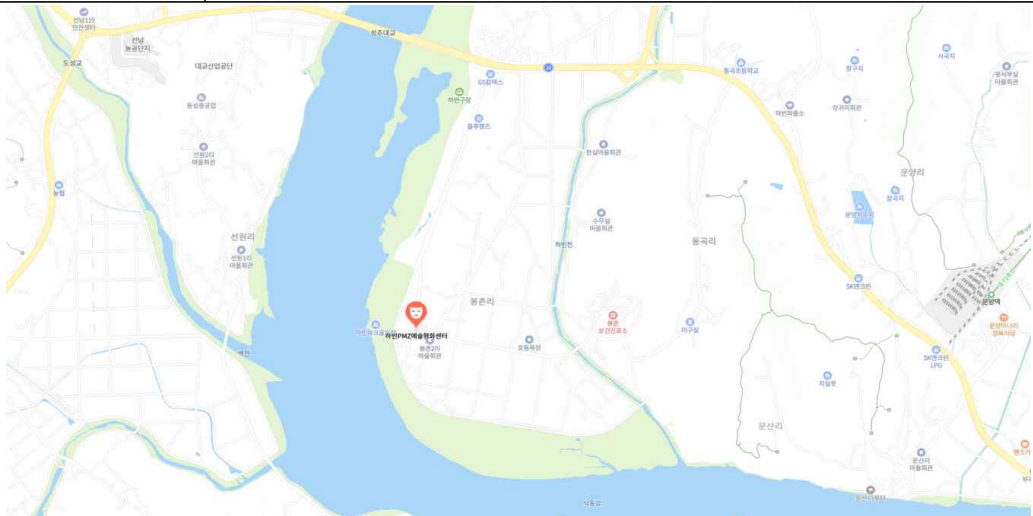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 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을 선정,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함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달성군 출연·출자기관 우선 위탁 ○ 위탁기간 : 2년(2026. 7. 1. ~ 2028. 6. 30.) ○ 위탁내용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건물 전체, 대지 및 부속 시설물 일체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그 밖에 위탁자가 해당시설의 소재지(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을축제 등)

적 정 성 점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시설 관리자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외 다른 문화시설 위탁 운영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음 ○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일반 민간업체 위탁운영 대비 달성문화재단의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등 위탁 비용 감소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달천예술창작공간 등 다수의 문화시설 위탁운영 경험과 공연·전시·교육 등 사업 진행 노하우를 하빈 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에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 매월 센터 방문객 수 등 성과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6. 7. 1. ~ 2028. 6. 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달성군이 출연·출자한 법인에 우선 위탁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의거) ○ 군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민 위 탁 금	○ 신규 위탁: 연간 위탁금 예상액 기재 - 177,290천 원 집행 예상(연간) (인건비: 61,640천 원, 운영비: 115,650천 원)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지역사회 대표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가능성 제시 ○ 지역주민 참여형 운영을 통한 함께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긍심 확립과 공동체의식 강화 ○ 향후계획 - 2026. 6. : 달성군-달성문화재단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7.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 운영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 설 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621.08㎡		
	시 설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준 공 일 자	2019. 6. 28.	개 원 일 자	2019. 8. 16.
	이 용 대 상	주민 및 방문객	수 용 인 원	약 50명
	보 유 장 비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위 치 도				
지 역 여 건	○ 하빈면 봉촌리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현 장 사 진	 〈사진 설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입구			

수의협약 사유서

현황 및 여 건	○ 해당 시설의 수탁 가능 업체 수: 총 1개																					
수의 계약 사 유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수의계약 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음 - 하빈PMZ평화예술센터는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평화를 기념하는 공간조성을 통해 안보교육, 지역자산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등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해당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거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대상 기관 검토 내용	<table><tr><td>위탁사무명</td><td>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td></tr><tr><td>예산 및 기간</td><td>177,290천원 / 2026. 7. 1. ~ 2028. 6. 30.</td></tr><tr><td>대상기관명(대표자)</td><td>(재)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td></tr><tr><td>주요사업</td><td>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td></tr><tr><td>설립일자 및 주요연혁</td><td>2011. 5. 17. 설립</td></tr><tr><td>인력현황</td><td><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td></tr><tr><td>근로자 고용안전성</td><td>정규직비율: 52%</td></tr><tr><td>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td><td><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td></tr><tr><td>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td><td>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다수</td></tr><tr><td>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td><td>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달천예술창작공간 등 문화 시설 관리 및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다수 진행</td></tr></table>		위탁사무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	예산 및 기간	177,290천원 / 2026. 7. 1. ~ 2028. 6. 30.	대상기관명(대표자)	(재)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	주요사업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1. 5. 17. 설립	인력현황	<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52%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다수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달천예술창작공간 등 문화 시설 관리 및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다수 진행
위탁사무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																					
예산 및 기간	177,290천원 / 2026. 7. 1. ~ 2028. 6. 30.																					
대상기관명(대표자)	(재)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																					
주요사업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1. 5. 17. 설립																					
인력현황	<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52%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붙임: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참고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다수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달천예술창작공간 등 문화 시설 관리 및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다수 진행																					

※ 수의협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재)달성문화재단 이사장 최재훈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8층
3. 설립목적 :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0.12.30.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2011.05.17.	달성문화재단 설립등기
2011.07.15.	달성문화재단 출범식 및 달성문화센터 개관식
2013.06.01.	달성군립합창단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2013.12.02.	달성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2020.11.10.	달천예술창작공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2021.05.07.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2022.12.06.	달성군 법정문화도시 지정

5. 주요사업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문화예술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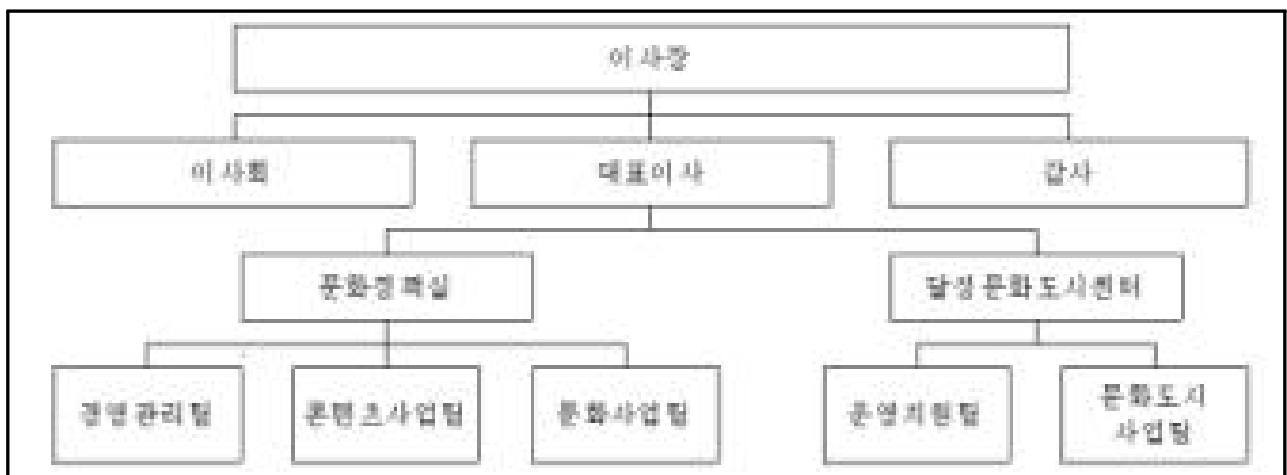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이사장	최재훈	현. 달성군수
대표이사	김중호	전. 달성군 자치행정국 국장
이사	김정화	현.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교수
이사	김중곤	전. 대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전. 경북공업고등학교 교장
이사	빈중희	현. 달성군 생활제조협회장 현. 달성군 동행봉사단 회장
이사	정대용	현.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전. 경북합창연합회 사무국장
당연직이사	최태식	현.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감사	김동열	현 미성회계법인 대표이사 현 정보재활원 내부감사
당연직감사	손계영	현.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7. 직원현황: 총 34명 (2026. 5. 21. 현재)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대표이사	김중호	-	재단 총괄	1년8월25일	임원
실장(대행)	김성수	-	문화정책실 총괄	13년1월6일	
팀장	곽원영	전산회계 1급	경영관리팀 총괄	14년11월1일	
팀장	장인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콘텐츠사업팀 총괄	10년2월20일	
대리	이시영	MOS마스터	문화사업팀 총괄	9년1월20일	
대리	김보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인사	8년2월9일	
대리	김윤미	Apple Certified Pro	콘텐츠사업 기획운영	6년5월26일	
대리	이지훈	전산회계 1급	세무	5년4월20일	
대리	박은혜	행사기획전문가 2급	콘텐츠사업 기획운영	5년4월20일	
주임	박윤하	문화예술교육사 2급	콘텐츠사업 기획운영	4년5월20일	
주임	조혜진	컴퓨터활용능력 2급	총무	4년3월7일	
주임	권다희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	콘텐츠사업 기획운영	4년3월14일	
주임	박수민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사업 기획운영	4년1월20일	
주임	최시내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사업 기획운영	3년4월20일	
주임	천수빈	전산회계 2급	회계	2년1월20일	
주임	김다예	-	문화사업 기획운영	2년1월20일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주임	김연주	컴퓨터활용능력 2급	콘텐츠사업 기획운영	2년1월20일	
공무직	고지현	전기기능사	시설관리	5년1월13일	
공무직	정신영	-	사업보조	3년4월20일	
기간제	권해경	-	사업보조	0년11월12일	
기간제	김경환	ITQ파워포인트	사업보조	0년2월20일	
기간제	이은주	컬러리스트 기사	달천 운영지원	0년3월19일	
기간제	김준수	풍선아트 2급	하빈 운영지원	0년6월17일	
센터장	김병수	GTQ그래픽기술자격	문화도시센터 총괄	3년1월4일	전문계약직
팀장	박영규	-	운영지원팀 총괄	3년1월4일	전문계약직
팀장	노시영	-	운영지원팀 총괄	1년4월19일	파견공무원
팀장	이상섭	-	문화도시사업팀 총괄	0년2월20일	전문계약직
팀원	김다예	ITQ아래 한글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2년1월20일	전문계약직
팀원	김은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인사총무	0년2월20일	전문계약직
팀원	최혜진	준학예사자격증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2년11월20일	전문계약직
팀원	유혜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1년11월18일	전문계약직
팀원	박해상	CAD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0년7월1일	
팀원	한성희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0년4월20일	전문계약직
팀원	김채현	GTQ그래픽기술자격	문화도시사업 기획운영	0년1월21일	전문계약직

8. 조직도



9. 재무현황 (기준일 2025. 12. 31. / 결산기준)

가. 재 산 : 총 7,698,274천원(현재가치로 환산)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현금	기본재산적립금	7,000,000
기타재산	현금	운영재산(현금및현금성자산)	421,333
기타재산	부동산	미수수익	215,296
기타재산	부동산	당기법인세자산	46,348
기타재산	부동산	투자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15
기타재산	부동산	유형자산(비품)	15,282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 채: 총 163,009천원

내 용	금 액(천원)
예수금(문화도시 e나라도움 반납예정액)	7,066
선수수익(출연금 잔액 부채인식)	101,193
미지급비용(연차수당충당부채)	54,750

다. 수 입: 총 8,171,236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문화정책실 출연금수익	3,557,063
문화도시 출연금수익 및 보조금수익	3,054,489
문화정책실 보조금 수익	123,359
순세계잉여금(재단, 문화도시)	1,059,731
기부금수익 (대전사)	50,000
예금 이자수익	266,309
기타영업외수익(법인세환급금 등)	60,285